

원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The image shows the homepage of the KISCON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news, search, and user accounts. A banner features a city skyline. The main content area has sections for 'What's New?', news, and various industry categories like construction management, engineering, and business. A sidebar on the right lists other services such as PIS and CIS.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건설업체 주요기능	발주자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변경통보- 현장기술인 이중배치 조회- 자사공사 각종 현황 및 통계조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확인-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확인-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상호비교- 현장기술인 이중배치 조회- 자사공사 각종현황 및 통계조회 등

정부가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원도급 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하도급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취지는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의무사항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설비건설업계는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회원사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해 게재한다. [편집자주]

1.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장기술인, 공사대금수령사항, 재하도급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현황,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체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구성

-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 시행 : 2008년

2. 건설공사대장

-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건설공사의 개요, 도급계약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률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현장기술자 배치 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현황, 하수급인 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부품제작 납품업체 등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종 정보가 종합적으로 기재되도록 구성
-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 시행 : 2003년

4.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주체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방식인 경우에는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 단, 대표사 외의 나머지 구성원은 대표사가 통보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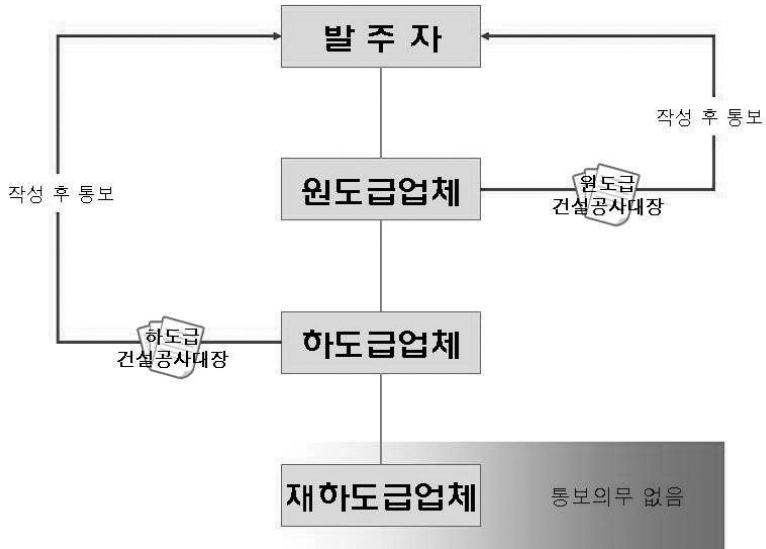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 단, 대표사 외의 나머지 구성원은 대표사가 통보한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하도급공사의 개요, 하도급계약내용, 보증금, 현



- ※ 국토해양부고시 공동도급운영기준(제2000-81호) 제5조의 규정. 공동수급의 경우에 대표사를 선정
- ★ 공동도급일 경우, 대표사가 미통보시 과태료는 대표사에게 부과됨

5. 원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 및 방법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전자적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시행령 부칙]

공사 구분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하는 주체	원도급자	하도급자
통보받는 주체	발주자	
통보대상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1월 1일 이후 3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20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VAT 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하도급)이 체결된 공사로서 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원도급업체의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하도급 받은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여도 통보대상이 아님
통보 내용	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추가) 사항	
통보 방법	건설산업정보망(http://www.kiscon.net)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통보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대장 통보 문의처 : 1588-8456 – 건설공사대장 사용자 매뉴얼 : KISCON 홈페이지 참조 	

6.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관련 행정처분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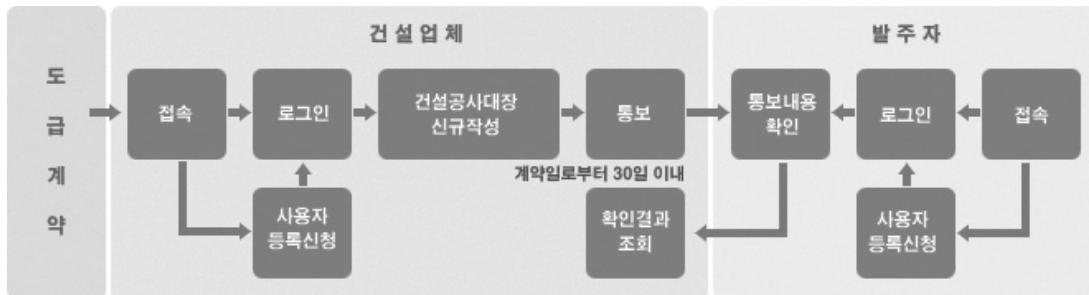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에 처해지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가 부과된다.

법조문	위반행위		행정처분
제81조 제3호	미통보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제99조 제3호	허위 통보	제2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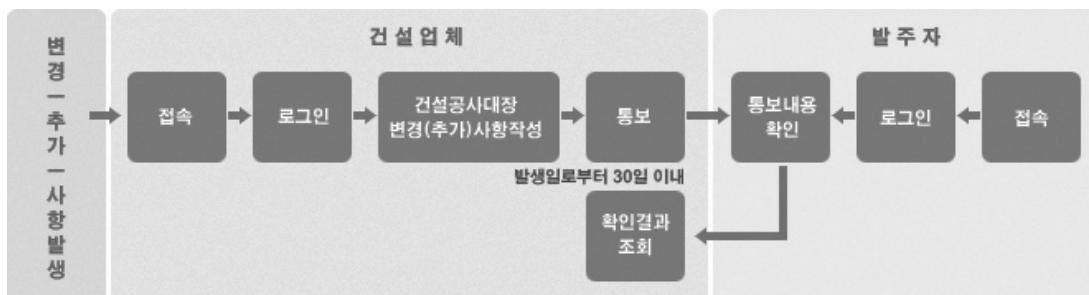
※ 공동도급일 경우, 대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경우에는 구성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

7. 통보 수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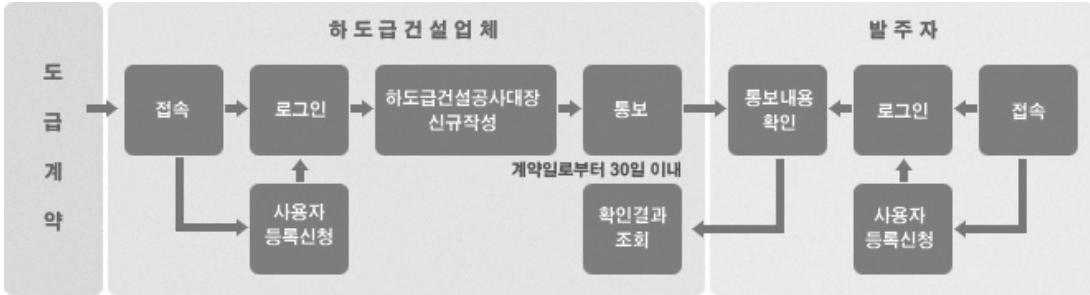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

